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4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1월 08일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 김규남, 김길영, 서상열, 아이수루, 이민옥, 이소라, 이효원, 장태용, 정준호 의원(9명)

1. 제안이유

○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고 있음.

○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마을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제4항)

나.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민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시민은 시장이 마을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1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⑤ 시민은 시장이 마을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